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용일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675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03월 28일

발 의 자: 김용일 의원(1명)

찬 성 자: 김동욱, 김영옥, 김영철,
김원중, 김재진, 김지향,
김춘곤, 김혜영, 박상혁,
박영한, 서상열, 서준오,
윤기섭, 이병도, 이봉준,
이상욱, 임만균, 최유희,
홍국표, 황유정 의원(20명)

1. 제안이유

- 현행 조례는 정비사업 종료 후 조합의 해산(청산) 계획 및 추진사항을 조합장이 구청장에게 정기적으로 제출하고, 구청장은 제출받은 자료를 시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 그러나 제출자료에 대한 공통서식이 규정되지 않아 미해산(청산) 조합에 대한 통합 관리가 미흡함.
- 이에 조합의 해산(청산) 계획 및 추진사항 자료 제출 시 규칙으로 정한 서식에 구체적인 일정을 포함하도록 하여 정비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미해산(청산) 지연 문제를 방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구청장이 매 반기가 끝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는 조합의 해산(청산) 계획과 추진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여 자료의 효율적 관리 체계 마련(안 제62조제3항)
- 나. 조합장이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조합 해산(청산) 계획 및 추진사항 관련 자료에 구체적인 일정을 포함하도록 하여 미해산(청산) 조합에 대한 관리 강화(안 제86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2조제3항 중 “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계획과 추진사항을”을 “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계획과 추진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”로 한다.

제86조제2항 본문 중 “제1항제4호”를 “구체적인 일정을 포함한 제1항제4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2조제3항은 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계획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서식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포함하여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개정으로 서울시의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	오희선
추계세제팀장	이정수
추계분석관	이홍래

☎ 02-2180-7952
e-mail : hongl004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